

##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안

# 심 사 보 고

2000. 2. 1  
기획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9년 12월 9일
- 회부일자 : 1999년 12월 9일

다. 상정일자 :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-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00. 1. 28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조정실장 차 주 영)

가. 제안이유

충청북도를 상징하는 도기, 휘장, 캐릭터 등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징물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와 통합관리와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(캐릭터사업 등)의 법적근거를 등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상징물의 종류 및 관리(제3조, 제6조)
- 상징물관련 사업(제7조) : 사업의 예시 및 민간위탁 근거,
-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징수, 면제(제8조, 제9조)
-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(제10조)

- 상징물사용 위반시 조치사항(제11조)
  - 상표법,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치
- 충청북도도기등에관한조례는 폐지(부칙) 등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전문위원 : 김 종 만)

충청북도 상징물관리 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도기, 휘장, 문장, 캐릭터 등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

도기, 휘장, 문장, 캐릭터 등의 모양과 규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충청북도 도기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상징물의 종류 및 관리, 상징물 관련사업,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,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, 상징물 사용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(안)

##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(안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를 상징하는 도기와 문장, 캐릭터, 동물, 식물 등을 규정하고,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상징물”이라 함은 도를 상징하는 도기, 문장, 휘장, 캐릭터, 동물, 식물 등을 말한다.

**제3조(상징물의 종류)** 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도 기 : 별표 1
2. 문장(철인)·휘장 : 별표 2
3. 캐릭터 : 별표 3
4. 도조(道鳥) : 까 치
5. 도화(道花) : 백 목련
6. 도목(道木) : 느티나무

**제4조(문장·휘장)** ①문장은 휘장·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.

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,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, 표창장, 공무원신분증
2.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, 면허, 인가증, 도 공공시설, 도유 및 도 관리 물자
3.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, 시설 및 물자

③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
2. 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,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
3.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④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[별지 1호서식]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)**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도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.

**제6조(상징물의 관리 등)** ①도지사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,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②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청북도 이미지형성 디자인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상징물 관련사업 등)** ①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
2.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
3.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
4.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8조(상징물의 사용승인)** ①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,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는 도지사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 [별지 2호서식] 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 [별지 2호서식] 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도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도지사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**제9조(사용료)** ①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도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대한 사용료납부시기·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.

③행사 등에 도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사용료 금액은 도지사가 정한다.

④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도가 후원하는 경우
2.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
3.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4.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10조(상징물관리위원회설치·운영)** ①도지사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전문가 등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“충청북도상징물관리위원회”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
1.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
2.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
3.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예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2.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 공무원
3.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

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기획관이 된다.

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1조(위반시 조치사항)** 도지사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, 도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,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“충청북도도기등에관한조례”는 이를 폐지한다.

[별표 1]

충청북도도기

(1) 도기모양(색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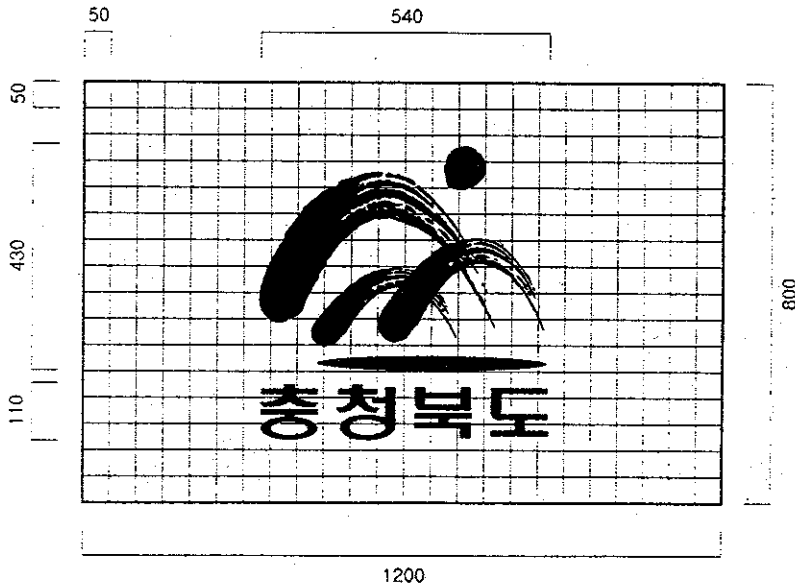


- 바탕 : 흰색
- 마크 : 적색(상단, 해)  
          녹색(중단, 산)  
          청색(하단, 물)
- 로고(글씨) : 검정색

※ 색상기준

- 충북적색 : DIC 564  
          (M100, Y87)
- 충북녹색 : DIC 643  
          (C100, Y86)
- 충북청색 : DIC 640  
          (C100)

(2) 도기규격(가로×세로, mm)



※ 도기의 규격 및 마크·로고의 규격은 위 규격을 표준으로 하되, 필요시 길이(가로)와 너비(세로)의 비례에 따라 그 규격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### (3) 도기의 상징

#### 가. 형 태

심벌마크는 밝은 해, 푸른 산, 맑은 물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청풍명월의 고장  
충북의 청정한 이미지를 형상화하였으며,

도기의 흰색 바탕은 충북도민의 순수함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무한한  
가능성을 의미한다.

#### 나. 내용설명

상단의 적색 태양은 충북의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며, 뿌리깊은 문화와 선비  
정신 등 충북인 고유의 정체성을 의미한다.

중상의 녹색 부분은 속리산, 월악산, 소백산 등 아름다운 충북의 자연을 힘  
차게 표현하여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충북의 모습을 의미한다.

하단의 청색 부분은 충주호, 대청호 등 내륙지대의 맑은 물을 상징하며, 생  
명의 근원으로써 발전해 가는 도정을 받쳐주는 터전을 의미한다.

#### [별표 2]

문 장



철 인



※ 문장과 철인은 도기의 예에 의하며, 색상과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 
적의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## 휘 장



충북적색

충북녹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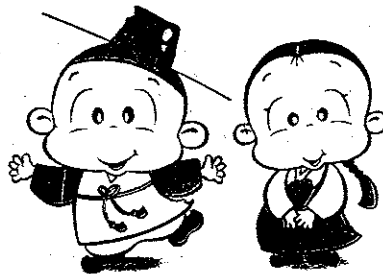
충북청색

※ 휘장은 필요용도에 따라 모양(색상)과 규격을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

### [별표 3]

## 캐 릿 터(마스코트)

### (1) 기 본 형



고드미

바르미

### (2) 내용설명

“고드미”와 “바르미”는 21C 주역이 될 남·녀 어린이를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친근한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충북과 충북인을 새롭게 표현한 것이다.

예로부터 중원문화의 발상지요, 애국충절의 고장인 충북전래의 선비정신과 기상을 바탕으로 21C 새 시대를 “울곧고”, “바르게” 개척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





[별지 제2호 서식]

## 상징물사용(변경)승인신청서

신청인	회 사 명	
	대 표 자	
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
	전 화 번 호 (FAX)	
사용상징물		
사용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
사용(변경)목적		
사용(변경)내용(구체적으로 작성)		
<p>&lt;첨부자료&gt;</p> <p>○ 개인의 경우 : 사용계획서, 주민등록증사본, 사업자등록증(해당되는 경우) 사본 각 1부</p> <p>○ 법인의 경우 : 사용계획서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</p>		

# 지방자치법(발췌)

## 제3장 조례와 규칙

### □ 제15조(조례)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